

#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제공 / 국세청 납세홍보과

##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2. 시행에 따른 세금 증가 여부

금융소득을 기존의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20%~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되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 3. 시행 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되므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4.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절차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세율로 원천징수 한후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부중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사업·근로소득 등)이 많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1억원중 4천만원은

[표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사례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남편		1억5천만원	3천만원	
배우자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5%로 분리과세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된다. 다음의 [표 1]의 경우에는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남편이 주된 소득자이므로 남편의 사업소득 1억5천만원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1천만원과 자산소득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 5천만원을 합한 2억 1천만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득 4천만원은 분리과세로 된다. 여기서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 합니다

### 5.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안내

1) 2000년에 정기에금을 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에금을 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 이자와 2001년 1월 1일 이후 기간이자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즉,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금융소득은 모두 종합과세가 되는가 여부는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표 2] 금융소득별 종합과세 대상여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당연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업 대금의 이자(사채이자)</li> <li>·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li> <li>· 비상장 법인의 배당소득</li> <li>· 국외에서 지급 받는 이자·배당 소득</li> </ul>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으로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신탁의 이자</li> <li>·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7년 이상)</li> <li>·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li> <li>· 장기저축성보험차익(7년 이상)</li> <li>·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li> <li>· 주식양도차익, 채권매매차익, 공익신탁의 이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장기저축·채권이자(신청한 경우)</li> <li>· 비실명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90%)</li> <li>·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li> <li>· 세금우대 종합저축이자</li> </ul>

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중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된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장기저축 및 장기채권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까지 반드시 금융기관에 분리과세신청을 하여야만 30%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선택 적용)(표 2).

3)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부모이고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합산과세 된다. ☞